

##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8. 4. 10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8. 4. 18
- 다. 상 정 일 자 : '98. 4. 17 (제6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
- 나. 개정사유
  -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 업무 담당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.
- 다. 주요내용
  - 경영정책실장 → 기획감사실장 (안 제2조 제2항)
  - 경영수익계장 → 업무담당계장 (안 제7조 제2항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허 길 중)

-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키위한 개정 조례로서,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답변요지

“생 략”

### 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중 "경영정책실장"을 "기획감사실장"으로 한다.

제7조 제2항중 "경영수익계장"을 "업무담당계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경영정책실장</u>이 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2조 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</p> <p>- - <u>기획감사실장</u> - - - - 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 (간사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<u>경영수익계장</u>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.</p>	<p>제7조 (간사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<u>업무담당계장</u> - - - -</p> <p>- - - - - .</p>